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양 권 석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9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9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채 상환기금의 존속 기한 설정(안 제9조)

▶ 2014년 12월 31일까지

나. 지방채상환기금 심의위원회를 충청북도조정위원회에서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 대행토록 개정(안 제5조)

4. 검토의견

가. 개정개요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안 제9조), 지방채상환기금 심의위원회의 대행을 충청북도조정위원회에서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 대행토록 개정(안 제5조)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안 제9조)
 - ▶ 2014년 12월 31일까지
- 지방채상환기금 심의위원회를 충청북도조정위원회에서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 대행토록 개정(안 제5조)

금번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

고, 지방채상환기금 심의위원회를 충청북도조정위원회에서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 대행토록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은 조례공포 후 약 5년 3개월로 설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은 2005년 12월 28일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9월에 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붙임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